

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- 2호

「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」 일부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 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월 8일

## 대전광역시의회 의장

###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#### 1. 제안이유

6·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,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·지원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“65세 이상” 나이 제한을 삭제함(안 제4조).

나. 2010년 7월 1일 이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부터 적용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2010년 7월 1일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(안 부칙 제2조).

### 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복지환경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)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

(전화 042-270-5127, FAX 042-270-5039, E-mail : ychm11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### 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##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”을 “참전유공자 또는”으로 한다.

조례 제5132호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2019년 1월분부터 지원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참전명예수당) ① 지원대상 은 <u>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</u>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대전광역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, 거주하는 사람으 로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4조(참전명예수당) ① ----- ----- <u>참전유공자 또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조(적용례) 제4조의 개정규정 은 <u>2010년 7월 1일 이후 참전</u> <u>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</u> <u>자부터 적용하되, 2019년 1월분</u> <u>참전명예수당부터 지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적용례) 제4조의 개정규정 에 따른 <u>참전명예수당은 2019</u> <u>년 1월분부터 지원한다.</u></p>

# 관 계 법 령

##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8. 6. 14.] [법률 제15478호, 2018. 3. 13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6·25전쟁"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.
2. "참전유공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6·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.
  - 가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(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군인
  - 나. 「병역법」 또는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
  - 다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
  - 라. 6·25전쟁에 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)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
  - 마.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·통제를 받아 6·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
2.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
3.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
4. 6·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

제6조(참전명예수당)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"수당지급 대상자"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
2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
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

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 다만,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.

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[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(이하 "체신관서"라 한다) 또는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의 계좌를 말한다. 이하 같다]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

한다. 이하 같다)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.

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를 준용한다.

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(月額)으로 지급하며,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비 용 추 계 서

1. 의안명 :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발생요인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명예수당 소요 사업비
- 관련조문 :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, 부칙 제2조

3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2019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명예수당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, 사망률을 고려하여 검토

나. 추계 결과

- 2019년 추정 비용을 기준하여 연도별 0.5% 감액

다. 연도별 비용추계표(별첨)

라. 재원조달방안 : 지방비 지원

4.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5. 작성자 : 복지정책과 행정7급 김현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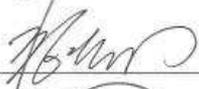
## 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계	
세 입	576,720	573,836	570,967	568,112	565,272	2,854,908	
지 방 세	576,720	573,836	570,967	568,112	565,272	2,854,908	
세 출	576,720	573,836	570,967	568,112	565,272	2,854,908	
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	576,720	573,836	570,967	568,112	565,272	2,854,908	
<b>재원 조달</b>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576,720	573,836	570,967	568,112	565,272	2,854,908
	지방세	576,720	573,836	570,967	568,112	565,272	2,854,908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[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]

**발 의 의 원 명 단**

연번	의 원 명	서 명	비 고
1	손희영		
2	이종훈		
3	김소영		
4	이보현		
5	윤광영		
6	조성진		
7	채계환		
8	우승훈		
9	홍종원		
10			
11			
12			
13			
14			
15			